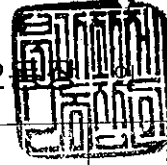
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04월 05일

북가좌제2동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전 *환	전 *환 1991-02-25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14길 (북가좌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4-02